『영광군 군민안전 보험』 혜택 안내

◈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1. 02. 01 ~ 2022. 01. 31(1년)
○ 보 험 료 : 영광군에서 일괄 납부완료
○ 가입절차 : 영광군민 전체 자동가입

◈ 보험가입 혜택

구 분	보 장 내 용	보 장 금 액
폭발,화재,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영광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산사태 사고 상 해 후 유 장 해	영광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 망	영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영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한도
강도상해 사망	영광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강도상해 후유장해	영광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영광군민 만12세 이하인자로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부상등급 1급~14급 2,000만원
익사사고사망	영광군민이 우연하고도 급격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영광군민이(농기계로인한사고)로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영광군민이(농기계로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한도
자연재해사망 (일사,열사포함)	영광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개인이동수단사고 배상책임	영광군민이 개인이동수단 운전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 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 ※ 타 보험 가입시 비례보상	1인당500만원한도 (자기부담금20만원)
선박 침몰·전복 사고 사망	영광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선박의 침몰 또는 전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온열질환 진단비	영광군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만원 (최초 1회한)
화상수술비	영광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서 수술을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만원 (수술 1회당)

○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는?**

1.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2.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

※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라 함은?**

1.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중 일어난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3.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4.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 **강도에대한 정의**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제339조에 의합니다.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5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합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타이어식 굴삭기」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도로보수트럭,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이하9종 건설기계 “라 함)를 말합니다.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않습니다.

○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①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이 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② 제1항의 “자연재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및 일사병”으로 아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2) 1. 태풍 2.홍수 3.호우 4.강풍 5.풍랑 6.해일 7.대설 8.낙뢰 9.가뭄 10.지진11.황사 12.조류대발생 13.조수 14.화산활동 15.일사병 및 열사병(T67.0)
3) ③ 제2항의 “자연재난”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

② 위 제1항에서 농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기계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에 해당하는 손해는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농기계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위한 운전(조정)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함.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침몰·전복 사고 사망

▸ 급격하고도 우연한 선박의 침몰 또는 전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침몰 및 전복사고라 함은?

※ 침몰 및 전복사고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아래와 같음.

1. 전복사고 : 선박이 뒤집혀지는 것 (충돌, 접촉좌초, 화재, 폭발에 의한 것은 제외)

2. 침몰사고 : 선박이 악천후 조우, 외관 등의 균열이나 파공, 절단 등에 의한 침수의 결과로 가라앉는 것(충돌, 접촉, 전복, 화재, 폭발에 의한 것은 제외)

※ ‘선박’이라 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 는 선박을 말함.

○ 온열질환 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1회에 한함)

※온열질환 :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온열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온열질환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함

○ 화상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심재성2도)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는 때에는 수술 1회당 화상수술비 지급

개인이동수단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

개인이동수단은 전기에너지로 구동하는 1인승 단거리 저속 이동수단으로 전기자전거 및 세그웨이(segway), 전동 휠, 전동 퀵보드를 말하며, 시속 25Km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기동력이 보조되지 않으며,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보험증권에서 피보험자가 대한민국에서 개인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해「신체장해」또는「재물손해」로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하 “보험사고”)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4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4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 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5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2. 기타 필요 서류 : 보험사에 문의 바랍니다.

문의 : MG손해보험(주) ☎ 1522-3556 FAX. 0505-181-5624

영광군 안전관리과 ☎ 061-350-5448